2012 통일교육 운영계획



▮ 목 차 ▮

Ι.	2012년 교육운영계획 개요	• 1
	1. 통일교육 운영방향	3
	2. 통일교육 운영체계	·· 4
	3. 통일교육 과정 현황	5
	4. 통일교육 일정표	7
Π .	세부 교육계획	. 9
	l 원내교육	
	1. 장기과정	• 11
	2. 학교 통일교육과정	19
	3.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27
	4. 사회 통일교육과정	41
	5. 특별교육과정	49
	기타교육	
	6. 사이버 통일교육과정	53
	7. 방북안내 교육	55
Ш.	교육일정 및 기관단체별 배정인원	57
IV.	행정사항(67
	1.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69
	2. 참고사항	
V.	부 록 ······	73
	1. 통일교육원 현황	75
	2.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안내 ···································	
	3. 통일전망대·통일관 안내 ···································	
	4. 북한자료센터 안내	
	5. 관련 법령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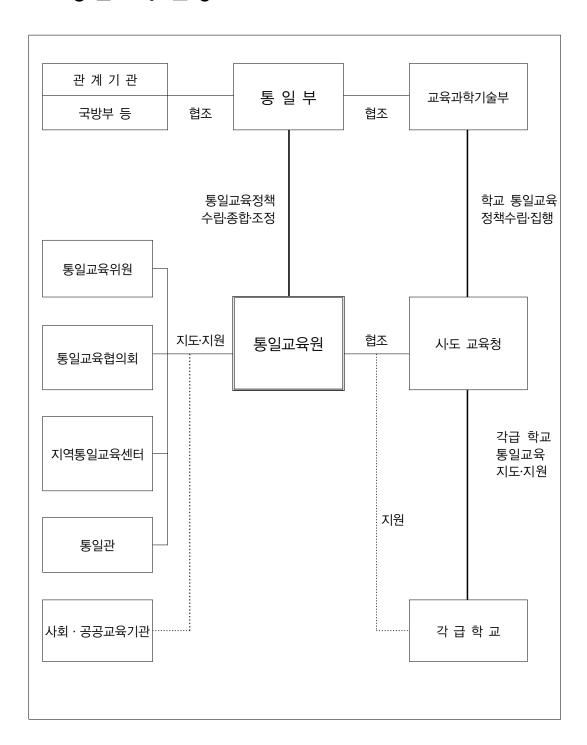
1. 2012년 교육운영계획 개요

- 1. 통일교육 운영방향
- 2. 통일교육 운영체계
- 3. 통일교육 과정현황
- 4. 퉁일교육 일정표

1. 통일교육 운영방향

-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에 바탕을 두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헌법 및 통일 교육지원법)
 -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 통일의 중요성, 통일혜택과 미래비전, 실질적 통일준비 및 통일과정에서의 주요과제 구체화
- 통일 미래세대 육성과 국민적 통일역량 결집에 영향력이 큰 '핵심전달자'교육 강화
 -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장학사·중등교사(교장·교감) 등에 대한 교육 내실화 및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통일의지 확산 및 국론결집을 위해 민·관의 최고위층 및 사회지도층 대상 통일교육 본격 추진
 - 정부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의 간부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대상별 차별화된 교과운영, 교육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효과 및 교육서비스 품질 제고
 - 원내교수·외부 전문가 참여, 교육운영 개편
 - 강의 모니터링. 체계적인 교육반응 측정 교육역량 강화
 - 교육관·생활관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 통일교육 운영체계



3. 통일교육 과정 현황

과정명			반 명	일수	횟수	인원			
	통일	미라	지도자(제7기)	44주	1	38			
		청.	소년 눈높이 강사	4주	1	20			
		사호	회통일교육 강사	4주	1	30			
장기교육	전문강사	북	한이탈주민 강사	8	3	100			
		0 -	수자연찬	3	2	100			
		소기	계		7	250			
			소계		8	288			
		기분	로	3	5	400			
	중등교사	장기	기(사이버+집합)	10	2	120			
		심호	화	5	4	240			
<u>-</u> -L	초등교사			3	5	400			
학 교 통일교육	초등교장교	L감		3	6	480			
0524	중등교장교	L감		3	4	320			
	통일교육시	l범호	학교 교사	2-5	2	80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사	3	1	60			
			소계		29	2,100			
	통일부		신규직원	5	1	30			
	공무원		역량강화	5	1	30			
	지방의회 9	의원		2	1	40			
	경기도 공	무원		4	2	60			
	중견간부 중	공무	원	5	4	200			
	중견실무 공	공무	원	5	8	343			
공 무 원	지방행정	-	사무관	3	1	108			
등 구 편	연수원		여성공무원	3	1	50			
8 =	수습사무괸	<u> </u>		1	1	280			
	비상계획딤	당자	}	3	1	30			
	북한이탈주		사회복지담담자	5	2	120			
	정착지원	4	보호담당자	5	3	120			
	정훈장교			5	1	65			
	보안경찰			5	1	81			
			소계		28	1,557			

과정명		반 명	일수	횟수	인원
	EOITO	신규위촉자	5	4	180
	통일교육위	재위촉자	3	4	180
	통일교육협	¹ 의회 임원	3	1	40
=.	민주평통 :	자문위원	2	1	200
사 회 통일교육	통일안보긴	; 사	2-3	3	130
0 5 5 4	이북5도민	간부	1	1	70
	하나센터	관계자	3	2	140
	통일관련단	·체 임원	2-3	7	480
		소계		23	1,420
	통일정책	최고위	6	2	60
		지자체 간부(부시장 등)	1	1	40
	사회	언론인	2	1	30
특별교육	지도층 지도층	재일민단 간부	4	1	80
	1123	대학교수, 국회의원 당선자 등	1–3	5	425
		소계		10	635
	원내고	고육 소계		98	6,000
		초등 단기		7	1,400
	교원직무	중등 단기		7	1,400
사이버	연수	초등 장기		6	600
통일교육		중등 장기		6	600
	공무원	통일문제 이해		7	2,450
	5 T T	북한 이해		7	2,100
	사이버	교육 소계		40	8,550
	Ž	통 계		138	14,550

4. 통일교육일정표

		교유							3	3월			41	긜			5	5월			6월			7월			8	3월		9월				10월			115	월		121
경	반명	일수	횟수	인원	연인원	원 1월 	2월	5~9	12~16	19~23	26~30	2~6	9~13 16~	20 23~2	27 30~4	1 7~11	14~18	3 21~25	28~1 4~	~8 11~1	5 18~22	25~29	2~6 9~	13 16~2	23~27	30~3 6~1	0 13~17	20~24 27~31	3~7 10	~14 17·	~21 24	~28 1	~5 8~f	12 15~19	22~26 29~	2 5~9	12~16	19~23 2	6~30 3	3~7
통일미	l래지도자반	44주	1	38	8,36																		2,8	-12,6(38))															П
	청소년 눈높이 강사반	4주	1	20	400																			2-28 (20)														П		\neg
	사회통일교육 강사반	4주	1	30	600																			T									\top				5-3 (30	30		\neg
육 전문강	나 북한이탈주민 강사반	8	3	100	800				(17)	22-23	29-30	5-6 (33)	12-13			(27)	17-18	(33)	31-1 7- (33) (3	-8 3)									(37) 13	34) (3)-21 27 34) (:	-28 4- 34) (3	-5 34)					ĺΤ		\neg
	이수자연찬반	3	2	100	300					(00)	(00)	(00)	(00)				(00)	(00)	(00)	V)										V-7) (V	, ,	J-1/ (C	7					\Box		\neg
	소계		7	250	2,100	,												1 1							1 1								\top	\neg	\vdash	+		\Box		\dashv
	소계		8	288	10,46	_	0			33								33						20						34			-		_		30	0		\dashv
	기본반	3	5	400	-	_	Ť		T .	T	26-28 (80)			1			T	T			T	27-29 (80)		1	1 1		1			- 0-	26	-28 30)	$\overline{}$	17-19	$\overline{}$	+	14-16 (80)		-	-
중등교		10	2	120	1,200		+				(80)			-	+	1	1				-	(80)		+		6-1	0			+	(8	30)	+	(80)	\vdash	+	(80)	\vdash	+	
800	심화반	5	4	240	1,200	_	+					2-6			+	+	1		_					+		(60)	20-24 (60)		17	7–21 30)	+	8-1:	12	\vdash	+-	\vdash	\vdash	+	_
+==		2	5	400			-					(60)			+	+	1	+	_	13-15	5 18-22 (80.80)			-		-	-	(60)	-	(6	60)	+	(60))	\vdash	+'	\vdash	\vdash	- 3	3-7 80,80)
초등교		3		_	1,200		-	-					16-	20 23-2	25	7-11	-		_	(80)	(80,80)			_	+		+		-	+	_	+	+		24-26		$\vdash \vdash$	\vdash	(80	0.80)
· —	고장교감반	3	6	480	1,440		-	-					(80.	80) (80))	(80,80))	-	_				4-6	_	+		-			+	_	-	+		(80)	 '	$\vdash \vdash$	$\vdash \vdash$	+	
_	2장교감반	3	4	320	960		-		-				12-13	-	30-4 (80,80	0)	-	-	_	_			4-6 (80)	_	23-27		-			+	_	-	+		22-24 (80)	 '	$\vdash \vdash$	$\vdash \vdash$	+	
_	2육시범학교 교사반	2,5	2	80	280		-	-	1	19-21		\vdash	12-13 (40)	-	+	+	₩	+		_	-	-		_	23-27 (40)	-	+	+	\vdash	+	+	+	+	+-	$\vdash \vdash$	+	$\vdash \vdash$	$\vdash \vdash$	+	_
상학관	반(사) 및 교육연구사반	3	1	60	180	_			<u> </u>	19-21 (60)	L						<u> </u>																				Ш		\rightarrow	_
	소계			2,100	_	_	0		1-	40	26-20		50	0			1	160			320		-	120			1	20		140			—	300		4	80)		
통일부 공무원	신규직원반	5	1	30	150	+			1	1	26-30				_	1	1	\sqcup	_						\perp			$\sqcup \sqcup$	\sqcup				\bot		\vdash	<u> </u>	Ш	10-22	\perp	
	78846	5	1	30	150		1			<u> </u>		igsquare			_	1	1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_		14 15			_	\perp			\vdash	$\sqcup \bot$				\bot		\vdash	<u> </u>	\sqcup	(30)		
_	의회 의원반	2	1	40	80							Ш		\perp	_	1			_	40	(40)			\bot	$\perp \perp$					14	_	\perp	\bot		$\vdash \vdash$	<u></u> '	Ш	\sqcup	\perp	
-	공무원반	4	2	60	240									\perp	_					(30)	0		0.0	1					11	-14 30)				10 15	igspace	<u></u> _'	igsqcup	\sqcup		
중견긴	· 부공무원반	5	4	200	1,000)																	2-6 (50)	16-20 (50)	0								8-1 (50	12 15-19 0) (50)	igspace			\Box		
중견실	일무공무원반	5	8	343	1,715							2-6 (40)					14-18 (40)	3				25-29 (40)	9-(4)	13		30-3 (40)				17	-21 40)				(63)		12–16 (40)	ш		
지방함	생정 사무관반	3	1	108	324					21-23 (108)																														
지방행 연수원	여성공무원반	3	1	50	150																							29-31 (50)												
수습시	l무관반	1	1	280	280																													17 (280)	П	T	\Box	П		
비상계	획담당자반	3	1	30	90																										25	-27 30)						\Box		
북한0	I탈즈미 사회복지담담자반	5	2	120	600																												\top		29-	-2 5 - 9 (60)		П		
정착지	보호담당자반	5	3	120	600								16-	20 23-2	7 30-4	1																	\top		(00	(00)		\sqcap		_
정훈징	·····································	5	1	65	325									3) (40)	(40)						18-22 (65)												\top					\Box		_
보안경		5	1	81	405	\top										7–11 (81)					(00)									\top	\top	\top	\top	\top		\top	\Box	\Box		
	소계		28	1,557	6,10	0	0		1	38			16	0		(01)		121			175			180				50		100				503			13	30		
이북5.	도민 간부반	1	1	70	70				Т		Г			Т	Т		Π	Т	4	1	T	Π		\top	Т		Т			т	т		\top	$\overline{}$		+-		\Box	_	_
_		2~3	3	130	350	+									+				(7	0)				_			16-17 (40)			_	_	+	十	15-17 (45)	\vdash	+-	12-14 (45)	\vdash	+	—
_	시크이주되면	5	4	180	900			-							+	+	+	21-25 (45)	-					16-20	0	_	(40)			+	24	-28 45)	+	(45)	\vdash	+-		19-23	+	_
통일교 위원	재위촉자반	3	4	180	540		-	1	1					25-2	27		 	(45)		-		25-27 (45)		(45)			+	29-31		+	(.	45)	+	+	24-26 (45)	+	\vdash	(45)	+	_
통일교	교육협의회 임원반	3	1	40	120		+		1				18-)	+	1	1 1		-		(45)		+		-	+	(45)		+	-	+	+		(45)	+-	\vdash	\vdash	+	—
		2	1	200	400		+	-	+			\vdash	(4)	0)	+	+	\vdash	+	-	_	-			+	+	_	+	27-28 (200)		+	+	+	+		\vdash	+'	$\vdash \vdash$	$\vdash \vdash$	+	_
_	명통 자문위원반	2	2	-	_	-	-		+					-	+-	9-11 (70)	14-16 (70)	3	_	-				+-	+ +	_	+	(200)		+	+	+	+		\vdash	+'	\vdash	\vdash	+	_
_	U터 관계자반	3	7	140 480	1,030		+	-	-		29-30		9-10	-	30-2				7-	-8 11-12 0) (70)	2			_	+		+			+	-	4-	-5		\vdash	+'	\vdash	\vdash	+	_
동일판	반련단체 임원반 ***	2~3		ı					<u> </u>		29-30 (70)		9-10 (60)		30-2 (70)		17-18 (70)		(7													4· (7	0)			+-	\sqsubseteq	$\perp \perp$		_
	소계			1,420	_	_	0		1	70	_		21	5	_		1	255		1	255			45 T			2	185 T T		45			—	160		4	90)0 	_	_
통일정	정책 최고위반	6	2	60	-	_											-	1		- 11					+				\vdash	_		_	—		\vdash	<u> </u>	\sqcup	\longrightarrow	\rightarrow	_
	지자체 간부반 (부시장, 군수 등)	1	1	40	_	_														11 (40)							_		40	14		_	—		\vdash		\sqcup	\vdash	_	_
육 사회지	언론인반 I도층	2	1	30	-	_																			\perp				(3	30)	_				\vdash	<u> </u>	\sqcup	\sqcup	7 00	
	재일민단 간부반	4	1	80	320		04.0																		05.07					_				'	\leftarrow	'	\sqcup	\coprod^{ϵ}	27–30 (80)	
	대학교수 등 (신설 예정 포함)	1~3	5	425	760		21-2 (대10	0)																	25-27 (유40)				(청	7 [285]			丄		حلب		Ш	ш	\bot	
	소계		10	635	1,540	0	100														40			40						315							80	0		
원 1	내교육 소계		98	6,000	29,59	9 0	100		3	381			87	5			5	569			790			405			4	155		634				963				10		
	초등교원반(장기)	5주	6	600									4.4-5.	2(100)					.16-6.20 (100)					7.4-8	3.8				3,22-9,26 (100)					10,3-11,7			1	11.1–12.6		
교육	중등교원반(장기)	5주	6	600									4.4-5.	2(100)				5	.16-6.20 (100)					5,16-6, (100)	.20			8	3,22-9,26					10,3-11,7			1	11,1-12,6		
- 6	명직무 중등교원반(장기) 면수 초등교원반(단기)	3주	7	1,400			1					4.4	-4.25(200)					5 16-6 6					7.4-	7 25				8,22-9,1	12				10.3-10			1	1,1-11,22	2	11,26	3-12
!	중등교원반(단기)	3주	7	1,400								4.4	-4.25(200)					(200) 5.16-6.6 (200)					7.4- (20	7.25				(200) 8,22-9,1 (200)	12	\neg			10.3-10 (200 10.3-10 (200	0.24	$\overline{}$	1	11,1-11,22 (200) 11,1-11,22 (200)	2	11,26 (2 11,26 (2	3-12
	북한이해	3주	7	2,450	 		1					_	-4,25(350)					5.16-6.6					7.4-	7 25				8 22-9 1	2	\dashv					\vdash	1	11.1-11.27	2	11,26	3-12
공	무원 통일문제 이해	3주		2,100	-							_	-4,25(300)					5,16-6,6 (350) 5,16-6,6 (300)					7.4- (30	7.25				(350) 8.22-9.1 (300)	12	\dashv	\dashv		10.3-10 (300	10.24	\vdash	1	11,1-11,22 (350) 11,1-11,22 (300)	2	11,26	3-12
	소계			8,550					1				1,2	50				,250				1	(30	1,250	0		1.	250					(300	1,250			(300)		(3) (UU
													.,.				٠,							.,_50			.,.		1					.,=00			_,0			

Ⅱ. 세부 교육계획

□ 원내교육

- 1. 장기과정
 - o 통일미래지도자과정(제7기)
 - o 통일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 2. 학교 통일교육과정
- 3.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 4. 사회 통일교육과정
- 5. 특별교육과정

□ 기타교육

- 6. 사이버 통일교육
- 7. 방북 안내교육

1. 장기과정

▲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제7기)

교육목표	o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중점	 ○ 통일·남북문제에 대한 기초지식과 분야별 과제연구를 통한 전문가 양성 ─ 남북 및 통일관련 제반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응능력 제고 ○ 통일준비 역량을 제고하고, 남북관계의 진전 및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야별 과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통일남북 관련 수행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및 체험, 기의연구 및 토론 기원로 합니다
교육대상 및 기간	개인연구 및 토론 기회를 확대 o 교육대상: 국가기관 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등 38명 o 교육기간: 2012.2.8~12.6 (44주) - 제1과정: 2.8~4.20 - 제2과정: 4.23~7.6 - 제3과정: 7.9~10.5 - 제4과정: 10.8~12.6 o 교육시간: 1일 7시간(09:00~17:00), 주 5일

- o 기본교과
 - 북한이해. 통일정책. 국제관계. 통일과정
- o 현장체험
 - 체제전환국 사례연구(유럽, 동남아), 중북 접경지역
 - NLL(백령도), 하나원 등 국내 정책현장

o 참여 학습

교과목

- 상호이해 워크숍, 남북 모의회담(협상 시뮬레이션), 현안문제 토론, 분임토의 등
- o 정책과제 연구
 - 남북관계 주요 현안과제 연구
 - 연구계획서 제출(~4.6),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 (4.11~9.28), 최종보고서제출(~11.4)
- o 소양 및 자기계발
 - 소양 교과, 외국어·정보화 교육, 체육활동·사회봉사활동 등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① 청소년 눈높이 강사

교육목표	o 각급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 o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강의기법 교육
교육 대상/일정	o 청소년 눈높이 강사 20명, 4주 <mark>합숙</mark> o 각 대학 북한학과·윤리교육과 졸업생 등 * 공모를 통해 선발
	o 기본과목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o 전문과목
교과목	〈북한이해〉 - 북한의 이해(시각 및 연구방법) - 북한의 대외정책 -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전략 - 북한 경제체제의 이해(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향후 전망 -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통일문제〉 - 통일문제 이해와 우리의 통일방안 - 통일 준비와 국민 합의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 남북 사회문화 통합방안 - 독일통일 교훈과 시사점 - 탈북 청소년의 정착실태와 과제
	〈통일환경〉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 독일통일의 교훈과 시사점
- 북·중관계와 한반도 통일
- 통일외교와 국제협력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역사적 맥락(전개)
- 남북회담의 주요이슈와 남북입장
- 개성공단 현황과 남북경협추진 전망
- 남북 인도적 문제의 이해
- 남북관계 현안과 쟁점 이해

〈통일교육〉

-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활성화 과제
- 초·중·고등 교과서 통일단원 분석
- 남북한 청소년 학교생활 비교
- 통일교육 시범 강의(눈높이 강사)
- 북한의 교육제도와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교과목

- o 강의훈련 과목
 - 강사의 조건 및 강의 이해
 -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청중의 마음을 끄는 법, story telling)
 - 교수매체 활용(PPT, 프리젠테이션 등) 및 강의 스킬
 - 강의안 작성 및 강의실습
 - 강의 및 대화기법
- o 참여활동
 - 탈북청소년과의 대화
 - 분임활동. 현안토론. 종합토론
 - 청소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
- o 체험학습
 - 현장견학(판문점, 백령도 등)
 - 유관시설 견학(한겨레학교, 여명학교 등)
 - 영상물 시청

② 사회통일교육 강사

교육목표	o 우리사회의 통일준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현장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o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강의기법 제공
교육 대상/일정	o 사회통일교육 강사 30명, 4주 <mark>합숙</mark> * 통일교육위원(신규위촉) 위주로 선발
교과목	o 기본과목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o 전문과목 〈북한이해〉 - 북한정권의 기원과 수립과정,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 북한의 대외정책 -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전략 - 북한 경제체제의 이해(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향후 전망 -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통일문제〉 - 통일문제 이해와 우리의 통일방안
	 통일 준비와 국민 합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남북 사회문화 통합방안 독일통일 교훈과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과제
	〈통일환경〉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 독일통일의 교훈과 시사점

- 북·중관계와 한반도 통일
- 통일외교와 국제협력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역사적 맥락(전개)
- 남북회담의 주요이슈와 남북입장
- 개성공단 현황과 남북경협추진 전망
- 남북 인도적 문제의 이해
- 남북관계 현안과 쟁점

〈통일교육〉

-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활성화 과제
- 사회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남북한 청소년 학교생활 비교
- 통일교육 시범 강의(사회통일 강사)

교과목

- o 강의훈련 과목
 - 강사의 조건 및 강의 이해
 - 교수설계 및 강의안 작성
 -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청중의 마음을 끄는 법. story telling)
 - 교수매체 활용(PPT, 프리젠테이션 등) 및 강의 스킬
 - 강의안 작성 및 강의실습
 - 강의 및 대화기법
- o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분임활동, 현안토론, 종합토론
 -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
- o 체험학습
 - 현장견학(판문점, 백령도 등)
 - 영상물 시청

③ 북한이탈주민 강사

교육목표	 일선 학교 및 사회현장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양성 강의기법 등 전문적인 강의훈련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교육능력 향상 		
교육 대상/일정	o 북한이탈주민 강사 100명(3회), 4주(주 2일) 비합숙 * 유관기관,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를 통해 선발 1차 2차 3차 3,22~4,13(매주 목·금) 5,17~6,8(매주 목·금) 9,13~10,5(매주 목·금) 33명 33명 34명		
교과목	o 기본과목 - 남북관계 현황과 대는 북한실상과 최근 동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등 통일미래 비전과 과 이 전문과목 -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을 무행한의 후계체제와 산 등일문제 이해와 남은 남북한 역사인식 비를 통일 준비와 국민 합의교와 국제협력 등 남북분단 배경과 남은 남북관계 현안과 쟁을 구가안보와 통일문제 대한민국의 건국과 등 민주시민교육과 소통	향 통일환경 제 과 특징 선군정치 북한 통일방안 비교 교 남의 주변정세 년 북관계 전망 점 비 국가정체성	

o 강의훈련 과목

- 강사의 조건 및 강의 이해
- 교수설계 및 강의안 작성
-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청중의 마음을 끄는 법, story telling)
- 교수매체 활용(PPT, 프리젠테이션 등) 및 강의 스킬
- 대화 및 강의기법

교과목

- 시범 강의 및 평가

o 참여활동

- 선배강사(탈북강사, 눈높이 강사, 사회통일교육 강사)와의 대화
- 분임활동, 종합토론
- o 체험학습 : 분단현장 및 산업 시찰

2. 학교 통일교육과정

☞ 중등교사 기본

교육목표		o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o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기법 체득				
	0	중등교사 400	명, 2박3일 🖥	r숙(20시간)		
교육		17	27	37	47	57
대상/일정		3.26~28일	6.27~29일	9.26~28일	10.17~19일	11.14~16일
		80명	80명	80명	80명	80명
교과목	- - - 0 -	강 의 남북관계 현 최근 북한동 통일 미래비 중고등학교 통 토론 등 참여 북한이탈주민 종합토론 현장 견학 등 판문점, 땅굴	향과 통일 환경 전과 과제: 분 통일교육의 방향 활동 !과의 대화 체험 활동	경 단비용, 통일바향과 과제	비용, 통일편으	

..... 중등교사 장기

교육목표	o 청소년 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사에 대한 통일교육능력 배양 o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기법 체득		
교육 대상/일정	o 중등교사 120명, 사이버+집합 합설 1기 8.6~10(사이버7.1~8.5) 60명	(70시간) 2기 '13.1,21~25일(사이버12,20~1,20) 60명	
	〈사이버 : 32시간〉 o 북한이해 : 북한이해의 기초, 통치이는 o 통일정책 :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통 o 통일과정 : 통일비용과 통일편의 등 o 통일교육 :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 전개 등	
교과목	○ 통일교육: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수업, 북한이탈학생 지도방안 등 〈집합: 38시간〉 ○ 강 의 - Post 김정일시대의 북한: 동향과 전망 - 북한의 교육제도와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 북중경제관계 현황과 남북경협의 과제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 통일미래비전과 과제: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통일교과단원 지도방안에 대한 토론 - 분임별 과제발표 준비 및 평가 ○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백령·연평도 등		

☞ 중등교사 심화

교육목표	o 청소년 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사에 대한 통일교육능력 배양 o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기법 체득			
교육 대상/일정	0 중등교사 240명, 1주 합숙(38시간) 1기 2기 3기 4기 4.2~6일 8.20~24일 9.17~21일 10.8~12일 60명 60명 60명 60명			
교과목	o 강 의	도와 남북한 교육 현황과 남북경협의 과 대북정책 반도 평화 과 과제: 분단비용 방향과 과제 날동 바의 대화 디도방안에 대한 토 표	통합방안 의 과제 용, 통일비용, 통일	편익

ᇓ 초등교사

교육목표	o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o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교수기법 체득				
교육	0 초등교사 40			1	
대상/일정	1기 6.13~15일 80명	2기 6.18~20일 80명	3기 6.20~22일 80명	4기 12.3~5일 80명	5기 12.5~7일 80명
교과목	 최근 북한당 통일 미래당 초등학교 등 이 토론 등 참여 북한이탈주 종합토론 이 현장 견학 등 	통일교육의 방향 셔 활동 민과의 대화 등 체험 활동 굴, 전망대 등	경 분단비용, 통일 향과 과제	비용, 통일편으	ļ

▲ 초등교장교감

교육목표	o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 o 일선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0	o 초등교장교감 480명, 2박3일 <mark>비합숙</mark> (20시간)		
교육 대상/일정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4.16~18일 4.18~20일 4.23~25일 5. 7~9일 5.9~11일 10.24~26일		
네0/ ㄹ0	4.10**16월 4.16**20월 4.25**23월 3.7**3월 3.9**11월 10.24**20월 80명 80명 80명 80명 80명		
교과목	 ○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최근 북한동향과 통일환경 - 통일 미래비전과 과제: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 초등학교 통일교육 사례 소개(시범학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종합토론 ○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판문점, 땅굴, 전망대 등 분단현장 - 영상물 시청 		

☞ 중등교장교감

교육목표	o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 o 일선 중등교육현장에서의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교육 대상/일정	o 중등교장교감 320년 1기 4,30~5,2일 80명	명, 2박3일 <mark>비</mark> 2기 5.2~4일 80명	합숙(20시간) 3기 7.4~6일 80명	4기 10.22~24일 80명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 최근 북한동향과 - 통일 미래비전과 - 중고등학교 통일교	통일 환경 과제: 분단비원 1육의 방향과	과제	
교과목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 종합토론 o 현장 견학 등 체험 - 판문점, 땅굴, 전당 - 영상물 시청	활동	현장	

▲ 통일교육 시범학교 교사

교육목표	o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o 통일교육시범학교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 및 학교 통일교육의 모델 개발		
교육 대상/일정	o 통일교육 시범(연구)학교 교시 1기(15시간) 4.12~13일, 40명	1 80명, 합숙 2기(38시간) 7,23~27일, 40명	
교과목	(1기, 2일〉 o 강 의	소년 통일의식 실태 및 개선안 포함) 로론 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육통합방안	

₩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사

교육목표	o 통일·북한문제의 이해제고 o 청소년 통일의식 실태파악 및 학교통일교육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
교육 대상/일정	o 장학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60명, 3.19-3.21, 2박3일 <mark>비합숙</mark> (20시간)
교과목	○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최근 북한동향과 통일 환경 - 통일 미래비전과 과제: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 사도 교육청별 통일교육 사례 소개(시범학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종합토론 ○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판문점, 땅굴, 전망대 등 분단현장 - 영상물 시청

3.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 통일부 공무원(신규직원)

교육목표	o 통일정책, 남북교류 및 대화, 정세분석, 통일교육 등 실질적인 통일 업무 추진역량 배양에 중점
교육 대상/일정	o 통일부 5급이하 신규 및 전입공무원, 일반직 전환 공무원 30명, 3.26-3.30, 1주 <mark>비합숙</mark> (34시간)
교과목	o 강의(각 실국 주요 업무소개)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 변화 - 북한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과제 - 개성공단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개성공단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남북회담의 역사 - 공직자 윤리 및 인사제도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 예술공연 - 둘레길 산책 - 분임토론 및 발표 -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전방사무소→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통일부 공무원(역량강화)

교육목표	o 통일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o 통일문제, 남북관계, 북한실상 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 도모
교육 대상/일정	o 통일부 5급-7급 공무원 30명, 11.19-11.23, 1주 <mark>비합숙</mark> (34시간)
교과목	o 강의(각 실국 주요 업무소개)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 통일 한반도 인프라 구축 -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 변화 - 북한의 체제변화 시나리오와 전망 -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과제 - 개성공단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남북회담의 역사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 예술공연 - 둘레길 산책 - 분임토론 및 발표 -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전방사무소→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지방의회 의원

교육목표	o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o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제고
교육 대상/일정	o 접경지역 의회의원(전·현직) 40명, 6.14-6.15, 1박2일 <mark>합숙</mark> (13시간)
교과목	o 강의 -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북정책 - 지자체 교류협력 사례와 과제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o 토론 등 참여활동: 없음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전방사무소→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경기도 공무원

교육목표	o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질적 교류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 무적, 전문적 지식습득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 제고 o 교육후 북중접경지역 또는 북한지역 체험연수를 통한 북한이해 도모				
교육 대상/일정	o 경기도 6급이하 공무원 60명, 4일 원내교육/ 5일 체험연수 <mark>비합숙</mark> (27시간+40시간=67시간) 1기 2기 조청교육 체험연수 초청교육 체험연수 6.12~6.15 6.18~6.20 9.11~9.14 9.17~9.20 30명				
교과목	 ○ 강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북한의 체제변화 시나리오와 전망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 지자체 교류협력 사례와 과제 - 남북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남북경협 전망 -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둘레길 산책 - 종합토론 o 체험연수 - 북중접경지역(연길→도문→방천→집안→단동→대련) * 북한방문 허용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연수				

... 중견간부공무원

교육목표	o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소속부처(기관)에서 수 행가능한 통일업무능력 배양							
교육 대상/일정	0 중인	: · 지방(교육)지 1기 7.2~7.6 50명	방자치단체 4~5 2기 7.16~7.20 50명	급 공무원 2005 3기 10.8-10.12 50명	명, 1주 <mark>비합숙(3,</mark> 4기 10.15-10.19 50	4시간)		
교과목								

.... 중견실무공무원

교육목표	o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일 관련 업무수행 능력 배양						
	o 중앙·지방(교육)지자체 6급 이하 공무원 240명, 1주 <mark>비합숙</mark> /합숙/(34시간)						
교육 대상/일정	1기 4.2~4.6 40명 5기 7.30~8.3 40명	2기 5.14~5.18 40명 6기 9.17~9.21 40명	37 6,25~6,29 40명 77 10,22~10,26 63명	4기 7.9~7.13 40명 8기 11.12~11.16 40명			
교과목	- 분단국 부문별 - 북한의 개발지 - 북한사회의 변 - 북한의 인권실 o 토론 등 참여활 - 북한이탈주민과 - 북한 예술공연 - 물레길 산책 -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차	세와 통일환경 근 동향 등일편익 과 과제 고류협력 사례 황과 전망 류협력 사례와 과 통합사례 이해 원과 추진전략 화 실태 태와 인권문제 동 바의 대화	ଃ땅굴→도라전망대				

◢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교육목표	o 지방자치단체 중견간부로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및 북한관 정립
교육 대상/일정	o 지방행정연수원 중견간부반 공무원(5급) 108명, 3.21-3.23, 2박3일 합숙(20시간)
교과목	 당의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개성공단 현황과 남북경협 추진 전망 북한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o 토론 등 참여활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지방행정연수원 여성공무원

교육목표	o 지방자치단체 여성중견리더로서 통일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전문적 지식습득을 통해 업무 수행능력 제고
교육 대상/일정	o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반 공무원(6급) 50명, 8.29-8.31, 2박3일 합숙(20시간)
교과목	 당의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남북통일과 여성의 역할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호론 등 참여활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한정견학 등 체험활동 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수습사무관

교육목표	o 초급관리자로서 숙지해야 할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중점			
교육 대상/일정	o 행정·외무고시 수습사무관 280명, 10.17, 1일 <mark>비합숙</mark>			
교과목	o 강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통일 미래비전과 과제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비상계획담당자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o 비상계획 업무담당자로서 필요한 대처능력 함양
교육 대상/일정	o 중앙·지자체 비상계획담당 30명, 9.25-9.27, 3일 <mark>비합숙</mark> (20시간)
교과목	o 강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방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 북한의 체제변화 시나리오와 전망 -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전략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전방사무소→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담당자

교육목표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착지원제도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 대상/일정	0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업무담당자 120명, 1주 합숙(34시간) 1기 2기 10.29~11.2 11.5~11.9 60명 60명			
교과목	o 강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제도 해설 - 정착지원업무 행정실무 -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이해 -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현황과 과제 - 북한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의 변화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 예술공연 - 둘레길 산책			
	 -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하나원→한겨레학교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보호담당자 보호담당자

교육목표	o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지식 함양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간 협조체제 구축				
교육 대상/일정	o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신변·취업보호업무담당자 120명, 1주 합숙(34시간)1기2기3기4.16~4.204.23~4.274.30~5.440명40명40명				
교과목	17 27 37 4.16~4.20 4.23~4.27 4.30~5.4		ŀ, 교육, 법률분쟁) 청		

■ 정훈장교

교육목표	o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o 각 부대 복귀 후 실시하는 육·해·공군 장병 대상 정신교육 질 제고
교육 대상/일정	o 국방부 및 육·해·공군 정훈장교 65명, 6.18-6.22, 1주 <mark>합숙</mark>
교과목	o 강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방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남북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 북한의 외교정책과 향후 전망 -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 북한 군부 주요인물 분석 -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전략 -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예술공연 - 둘레길 산책 -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 강사 안내, 동영상 시청

▲ 보안경찰

교육목표	o 대북정책 이해 및 한반도 주변정세 이해 제고 o 건전한 안보관 및 균형 잡힌 북한관 정립			
교육 대상/일정	o 전국 보안경찰 공무원 81명, 5.7-5.11, 1주 <mark>합숙</mark> (34시간)			
교과목	o 강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방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전략 - 북한 통치리더십과 정책결정과정 -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 북한그부 주요인물 분석 -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 방안 - 북한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 북한의 외교정책과 향후 전망 o 토론 등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예술공연 - 둘레길 산책 - 종합토론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판문점→경의선출입사무소→제3땅굴→도라전망대 ※ 이동시 북한이탈주민강사 탑승 안내, 동영상 시청			

4. 사회 통일교육과정

.... 통일교육위원(신규위촉자)

교육목표	o 2012년에 신규로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통일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교육 대상/일정	o 통일교육위원 (제1기 5,21-5,25	제2기 7.16-7.20	제3기 9.24-9.28	제4기 11,19-11,23
	45명	45명	45명	45명
교과목	- 한반도 주변정 - 통일비용과 통 - 통일미래와 여 - 통일교육위원의 이 토론 등 참여 함 - 북한이탈주민의 - 종합토론 - 분임 토의(현정	근 동향(또는 최근 세와 통일 환경 일편익(또는 동일 론지도층의 역할 리 활동 방향 설명 활동 과의 대화		

.... 통일교육위원(재위촉자)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 통일교육 위원의 통일교육 실시 역량 강화			
교육	o 통일교육위원 재위촉자 180명, 2박3일 <mark>합숙</mark> * 재위촉자중 '11년 통일교육원 교육이수자는 제외			
대상/일정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4.25-4.27	6.25-6.27	8,29-8,31	10,24-10,26
	45명	45명	45명	45명
교과목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또는 '최근 북한 정세 분석')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통일미래비전과 과제') - 통일교육위원의 활동 방향 설명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종합토론		_ ,	
		. – – –	방지역(재위촉자,	1일)

▲ 통일교육협의회 임원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협의회의 통일교육활동 지원	
교육 대상/일정	o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임원 40명, 4.18-4.20, 2박3일 <mark>합숙</mark> * '11년 통일교육원 교육이수자는 제외	
교과목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또는 최근 북한 정세 분석)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동일 미래비전과 과제) o 토론 등 참여 활동 - 종합토론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o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판문점, 연천, 철원, 강화 등 전방 지역 * 이동시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자문 위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			
교육 대상/일정	o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 200명, 8.27-8.28, 1박2일 합숙 * 생활관 수용 초과인원은 비합숙 * '11년 통일교육원 교육이수자는 제외			
교과목	* '11년 통일교육원 교육이수자는 제외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또는 최근 북한 정세 분석)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동일 미래비전과 과제) - 통일미래와 여론지도층의 역할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종합토론			

■■ 통일안보강사

교육목표	0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통일안보 강사의 통일교육 활동 지원							
		o 통일안보강사 130명, 1박2일(2박3일), <mark>합숙</mark> * '11년도 통일교육 이수자는 제외							
교육		제1기	제2기	제3기					
대상/일정		8.16~8.17	10.15~10.17	11.12~11.14					
		40명	45명	45명					
		나라사랑운동본부(40)	재향군인회(41) 재향군인여성회(4)	재향군인회(45)					
교과목	0 -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남북군사회담의 의제의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 종합토론 -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판문점, 연천, 철원, 경 * 이동시 북한 관련 동	음일환경 또는 동일 미래비전과 과 쟁점 명 (또는 북한이탈주민: 동(제2기와 3기에 한함) 강화 등 전방 지역	과의 대화))					

■ 이북5도민 간부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대상/일정	o 이북5도위원회 위원 70명, 6.4, 1일 <mark>비합숙</mark>
교과목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통일 미래비전과 과제)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 하나센터 관계자

교육목표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					
	o 하나센터(30개소) 관계자 140명, 2일3일, <mark>합숙</mark>					
교육	제1기	제2기				
대상/일정	5.9~5.11	5.14~5.16				
	70명	70명				
교과목	o 강 의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동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제도 - 하나센터 운영 실무 o 토론 등 참여 활동 - 종합토론 o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판문점, 연천, 철원, 강화 등 전* * 이동시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도 해설				

▲ 통일관련단체 임원

교육목표	o 통일·여성·종교·지역사회 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일의지 함양					
	o 통일관련단체 임원 480명, 1박2일(2박3일) 합숙 * '11년 통일교육원 교육이수자는 제외 * 금년에는 '단체 회원'이 아닌 '단체 임원'중심으로 교육					
교육 대상/일정	제1기 3,29~3,30 70명 팔각회 40명 민통중앙협의회 30명	제2기 4.9~4.10 60명 통일여성안보중앙회 40명 대한어머니회 20명	제3기 4.30~5.2 70명 기독교교단협 40명 구세군 30명	제4기 5.17~5.18 70명 기독교총연합회 20명 동학민족통일회 20명 민통중앙협의회 30명		
	제5기 6.7~6.8 70명 경북대평화문제연 30명 북한문제연구협 40명	제6기 6.11~6.12 70명 남북청소년교류연맹 30명 민족통일촉진회 40명	제7기 10.4~10.5 70명 민통중앙협의회 40명 한국통일진흥원 30명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3일 과정)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동일 미래비전과 과제)					
교과목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3일 과정) - 종합토론(3일 과정)					
	o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 연천, 철원, 강화 등 전방 지역					

5. 특별교육과정

■ 통일정책 최고위

교육목표	o 우리사회 최고위층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제고
교육 대상/일정	o 고위공무원, 군 장성, 기업CEO, 학계·언론사 대표 등 30명 내외 * 하반기(2기) 30명 내외 교육 예정 o 2012.3~5월(격주), <mark>비합숙</mark>
교과목	o 강 의 - 국정철학과 통일의 과제 - 우리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북한의 실상과 변화 전망 - 국가안보와 국방분야 과제 -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 특강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현장방문(판문점, 출입사무소 등)

■ 지자체 간부

교육목표	o 대국민 통일교육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정립 o 통일교육 및 통일의 필요성,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대상/일정	o 접경지역(경기·강원) 부시장·군수, 실·국장 40명, 6.11, 1일 <mark>비합숙</mark> (6시간)
교과목	o 강의(경의선출입사무소 시설 사용)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 o 현장견학 등 체험활동 - 전방사무소→판문점→제3땅굴→도라전망대

■ 언론인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통일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교육 대상/일정	o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20명) 등 30명, 9.13-9.14, 1박2일 <mark>합숙</mark>
교과목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통일 미래비전과 과제)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 세미나(평화통일을 위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 재일민단 간부

교육목표	o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감대 형성 o 통일에 대한 비전 제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
교육 대상/일정	o 재일민단 간부 총 80명, 11.27-11.30, 3박4일 <mark>합숙</mark> * '11년 통일교육원 교육이수자는 제외
교과목	o 강 의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또는 동일 미래비전과 과제) -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외교부 관계자 또는 한일관계전문가) o 토론 등 참여 활동 -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6 현장 견학 등 체험 활동 연천, 철원, 강화 등 전방 지역 * 이동시 북한 관련 동영상 상영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6. 사이버 통일교육과정

교 교원직무연수

교육목표	o 교원의 통일교육 관련 지도능력 배양 및 전문교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o 단기과정 : 30시간/2학점, 정원 250명						
	기수	모집지역 수강신청기		기간	학습기간		비고
	17	전국	3.20-	4.3	4.4-4.25		
	2기 전국		5.1-5.	15	5.16-6.6		
	37	전국	6.19-7	7.3	7.4	4-7.25	온라인시험 : 있음
	47	전국	8.7-8	.21	8.2	22-9.12	출석시험 : 없음
	57	전국	9.18-1	0.2	10.3	3-10.24	출식시험 · ᆹ급
	6기	전국	10.16-1	0.31	11.	1-11.22	
	77	전국	11,11-11	.25	11,2	6-12.19	
	o 장기	과정 : 60시	간/4학점,	정원	: 1505	පි පි	
교육일정	기수	모집지	l역	수강신	청기간	학습기간	비고
/인원	17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3.20	-4.3	4.4-5.2	
	27	대전 · 충	동남북	5.1-	5.15	5.16-6.20	
	37	부산 ·	경남	6.19	-7.3	7.4-8.8	온라인시험 : 있음
	47	대구 · 울산 · 경북		8.7-	-8.21	8.22-9.26	출석시험 : 있음
	57	광주 · 전남	북·제주 9.18		-10.2	10.3-11.7	
	6기	전국	1	10.16-	-10.31	11.1-12.6	
* 교육비 : 없음 * 상기 일정은 콘텐츠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장기과정에서 각 기수별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것은 출석시험 지역에서 진행하여 교육생 참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교사도 수강 가능. 전국적 고사장을 갖춘 원격연수 전문기관과 합 있음.						은 출석시험을 해당 것이며, 다른 지역의	
교과목							마목 27개 차시 나목 53개 차시

공무원

교육목표	o 공무원의 통일문제·대북정책 이해 제고 및 통일대비 직무역량 강화						
	_	o 통일문제 이해 : 상시학습 19시간, 정원 400명 o 북한 이해 : 상시학습 21시간, 정원 400명					
	기수	모집지역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참고사항		
	17	전국	3.20-4.3	4.4-4.25			
교육일정	27	전국	5.1-5.15	5.16-6.6			
/인원	37	전국	6.19-7.3	7.4-7.25	온라인시험 : 있음		
/ 근건	47	전국	8.7-8.21	8.22-9.12			
	57	전국	9.18-10.2	10.3-10.24	출석시험 : 없음		
	6기	전국	10.16-10.31	11.1-11.22			
	77	전국	11.11-11.25	11.26-12.19			
	※ 상기 일정은 콘텐츠 개편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과목	 이 통일문제 이해 :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 통일편익,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남북관계의 전개, 북한이탈주민과 남북한 사회통합 등 19차시 이 북한 이해:북한이해의 기초,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관계, 한반도 안보환경과 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 등 21차시 						

7. 방북안내 교육

교육목표	o 방북 관련 절차지식·정보 제공				
교육 일정	o 사이버 교육 : 365일 상시 운영 o 통일교육원 방문교육 : 격주 ·목요일 o 남북출입사무소 영상교육 : 매일(토·일, 공휴일 제외)				
사이버 교육	o 운영방식 - 교육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 전화문의: 평일 09:00~18:00 o 수강: 사이버방북안내교육시스템(http://uniedu.go.kr) 회원가입후 수강 * 본인확인: 로그인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o 교육이수 처리 - 이수조건:필수 2과목, 선택 2과목(방북지역, 방북목적 각각 1개과정) - 이수결과는 통통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 문의처: 교육총괄과 02−9017−182				
	o 교육신청: 인터넷(통통시스템 http://www.tongtong.go.kr), 전화(02-901-7052) 또는 팩스(02-901-7059)로 신청 * 개성공단 방문예정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http://oks.kidmac.con 통해서도 신청 가능 o 교육실시 - 교육장소: 통일교육원(강북구 수유동) - 일자·시간: 격주·목요일, 14:00~16:40(* 10명 미만시 미실시) o 교육내용				
통일교육원	과목명	주요내용	시간		
방문교육 (정례교육)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우리의 대북정책, 북한 실상	50분		
(0川北平)	북한방문 안내	○ 방북안내 동영상, 유의사항, 기타 최근 안내사항	40분		
	평양(개성) 체류 안내 ○ 방북경험담 및 사례중심의 유의사항 ○ 질의응답 50분				
	o 교육이수처리 - 통일교육원에서 통통시스템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입력 - 방북승인부서가 교육이수자 명단을 확인한 후 방북승인 및 방북증 발급 ※ 문의처: 교육운영과 02-9017-052				

Ⅲ. 교육일정 및 기관·단체별 배정인원

- 1. 퉁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2. 학교 통일교육과정
- 3.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 4. 사회 퉁일교육과정
- 5. 특별교육과정

1.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냢	经局各世	학급인원
청소년 눈높이 강사	0702–0728	20
사회통일교육 강사	1105–1130	30
북한이탈주민 강사(제1기)	0322-23, 0329-0330, 0405-0406, 0412-0413	33
북한이탈주민 강사(제2기)	0517-0518, 0524-0525, 0531-0601, 06070608	33
북한이탈주민 강사(제3기)	0913-0914, 0920-0921, 0927-0928, 1004-1005	34
	계	100

닖쨞

2. 학교 통일교육과정

凯	흥	80	88	80	8	8	09	09	09	09	09	09	80	8	8	8	8	88	80	88	8	80	80	8	8	80	8	40	40	8	2,100
F H	₹0 <																														
	사	-	-	-	-	-	2	-	-	-	-	-	က	5	4	2	2	ω	ω	က	4	က	4	က	4	2	က	2	2	4	78
	ると	-	2	က	2	က	-	2	က	2	ļ	2	2	1	2	-	-	5	2	2	က	2	က	-	2	1	-	1	1	က	89
	땅	9	유	10	유	우	വ	വ	S	2	2	വ	10	유	유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က	က	4	300
	전마	-	2	က	2	က	-	2	5	2	ļ	5	2	က	က	က	က	2	2	က	2	က	2	က	2	လ	2	က	3	4	78
	전	-	-	-	-	-	-	-	-	-	-	-	-	-	-	2	-	-	-	2	-	2	1	-	-	1	-	2	2	က	36
	零	4	4	4	4	4	2	2	က	2	-	2	4	4	4	2	4	4	4	4	4	4	4	4	4	4	4	က	2	4	66
	帆	-	2	2	2	2	-	က	-	2	2	-	က	က	ည	7	∞	4	2	12	Ξ	#	12	တ	4	17	18	က	က	4	172
祕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티 유 정	37	27	24	30	32	27	7	23	∞	7	56	14	24	53	24	22	8	20	20	20	20	20	20	20	15	20	20	4	2	7	559
	울산	က	4	4	4	4	4	വ	4	2	က	2	က	က	က	က	က	2	2	က	4	4	4	-	က	-	-	က	က	4	95
	무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က	2	က	2	က	က	4	64
	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0
	인천	-	-	-	-	-	-	-	-	-	-	-	-	-	-	-	-	-	-	-	-	-	2	2	-	2	-	2	2	က	36
	남	က	က	က	က	က	က	က	2	2	2	2	က	က	က	က	က	2	2	Ŋ	2	2	2	2	က	4	4	က	က	2	110
	뉴	က	2	4	4	4	ω	വ	2	2	2	က	2	က	က	വ	വ	-	-	-	-	-	0	-	-	-	2	က	က	4	74
	사용	20	20	10	우	13	တ	က	50	17	7	20	15	10	9	우	우	Ŋ	4	Ŋ	2	2	4	10	15	4	4	က	က	4	275
- F	月 加 00	0326-0328	0627-0629	0926-0928	1017-1019	1114-1116	0806-0810	13년 0121-0125	0402-0406	0820-0824	0917-0921	1008-1012	0613-0615	0618-0620	0620-0622	1203-1205	1205-1207	0416-0418	0418-0420	0423-0425	0507-0509	0509-0511	1024-1026	0430-0502	0502-0504	0704-0706	1022-1024	0412-0413	0723-0727	0319-0321	
3	다 50	중등교사 기본(1기)	중등교사 기본(2기)	중등교사 기본(37)	중등교사 기본(4기)	중등교사 기본(5기)	중등교사 장기(1기)	중등교사 장기(2기)	중등교사 심화(1기)	중등교사 심화(2기)	중등교사 심화(3기)	중등교사 심화(4기)	초등교사(1기)	초등교사(271)	초등교사(3기)	초등교사(4기)	초등교사(5기)	초등교장교감(1기)	초등교장교감(2기)	초등교장교감(3기)	초등교장교감(4기)	초등교장교감(5기)	초등교장교감(6기)	중등교장교감(1기)	중등교장교감(2기)	중등교장교감(3기)	중등교장교감(4기)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사(1기)	동일교육시범학교 교사(2기)	장학사(관) 및 교육연구사	기관별 계

3.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पा का						0	-			ဖ
박 의	30	30	40	90	30	280	30	92	81	616
전 전									6-	6-
엄마 의 기 마 의						30				30
정수에 내										0
는 아이는 이것										0
ᄵᄵᇌᇅ										0
※ ※ 첫 하고 다										0
전부하다										0
(일일)			(20)	30	30					80
무명하다										0
고요하장고										0
ᅈᆙᇝᅲ										0
전 후 등									06	90
중 등 등 등 등 등						250				250
ᆁ마마										0
中 金 中								99		65
급유 다 한 다 송 만										0
메이 의미나	30	30					30			06
티 유 8 8 8	0326-0330	1119-1123	0614-0615	0612-0615	0911-0914	1017	0925-0927	0618-0622	0507-0511	
반명(기수)	통일부 공무원 (신규및 전 3)	통일부 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의회의원	경기도 공무원(1기)	경기도 공무원(2기)	수습사무관	비상계획담당 공무원	정훈장교	보안경찰	기관별 계

내 나 그 메 地域 60	
3 1 1 1 5	世中 中 中 中
3 6 3 1	3 7
3 6 3 1 23 1 23 1 23 1	
1	3 7
14 4 4 1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4 4 14 4 14	
1 2 4 4 5 5 2 2 2 2 2 2 3 4 3	2 2
4 4 28 1 4 4 14 1 1 4 19 1 1 4 14 1 4 14 14 1 4 4 14 1 2 2 26 1 108 20 2	2 2
1 4 4 14 14 14 19 19 19 19 11 14 19 11 14	2 2
1 1 4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
1 4 14 1 4 14 1 4 2 1 2 2 1 2 2 1 2 2 1 2 2 2 2 2 3 3 3 4 3 3 5 4 3 5 4 4 6 4 4 7 4 4 8 4 4 8 4 4 9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4 10 4	2
1 4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6	2 2
50 50	2
90	
10 12 2 1 21 8 0 30 0 0 0 0 0 158 9 146	12 20

							140	광역자치단체	<u>라</u> 체								
반명(기수)	교육일정	부산 광역시	이전 광역시	마 아역시	대전 광역시	광주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다 다	전 F F	충청남도 (의희)	※ 내	경상남도 (의회)	발 상 대	전 전0	이 명
중견간부공무원(1기)								13				(1)		(1)		-12	20
중견간부공무원(2기)		3	-	လ		9	16		-	9			13	8		2-	20
중견간부공무원(3기)												(1)				-2	20
중견간부공무원(4기)		က	-			4	16	6	-	9			∞	2			20
중견실무공무원(1기)		-	-	-			9	15	-	4			က	2		-34	40
중견실무공무원(2기)		-	1			4	9	13	2	2			2	3		-20	40
중견실무공무원(3기)		-					9	10		9				4		-23	40
중견실무공무원(4기)		-					9	10		9			9	2		-15	40
중견실무공무원(5기)		-					9	10	-	4						2-	40
중견실무공무원(6기)		-	-				9	12		D.			-	2		-12	40
중견실무공무원(7기)			-				9	Ξ	-	4			9				63
중견실무공무원(8기)							9	=		-						-17	40
지방행정연수원(1기)																	108
지방행정연수원(2기)																	20
기관별	짜	6	9	4	0	14	80	114	2	47	0	2	39	26(1)	0	86-	701
ਜੋ 	반명(기수)			교육일정	 전0		등 다.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u>사</u>		KI	전 전 전			학급인원	
퍼	보호담당(1기)			0416-0420	420			09				i i	-20			40	
	보호담당(2기)			0423-0427	427			09				ľ	-20			40	
. (정한 1 전화 1	보호담당(3기)			0430-0504	504			09				ľ	-20			40	
	사회복지담당(1기)			1029-1102	102			90				ſ	-30			09	
γ.	사회복지담당(2기)			1105-1109	109			06				ſ	-30			09	
	기관별	₹						360				ï	-120			240	

牆쨞

4. 사회 통일교육과정

단체명(대상인원)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동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5명)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40명)	민주평통사무처(200명)	나라사랑운동본부(40명)	o 재향군인회(41명) o 재향군인여성회(4명)	재향군인회(45명)	이북5도위원회(70명)	통일부 정착지원괘(70명)	통일부 정착지원괘(70명)	o 팔각회(40명) o 민족통일중앙협의회(30명)	o 통일여성안보중앙회(40명) o 대한어머니회(20명)	o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40명) o 구세군(30명)	0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명) 0 동학민족통일회(20명) 0 민족통일중앙협의회(30명)	o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30명) o 북한문제연구협의회(40명)	o 남북청소년교류연맹(30명) o 민족통일촉진회(40명)	o 민족통일중앙협의회(40명) o 한국통일진흥원(30명)	
이용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	40	45	45	20	70	70	70	09	70	02	70	70	20	1,420
하	2	2	2	2	က	က	ო	က	က	2	2	3	က	1	က	3	2	2	т	2	2	2	2	
징정	0521-0525	0716-0720	0924-0928	1119–1123	0425-0427	0625-0627	0829-0831	1024-1026	0418-0420	0827-0828	0816-0817	1015–1017	1112–1114	0604-0604	0509-0511	0514-0516	0329-0330	0409-0410	0430-0502	0517-0518	8090-2090	0611–0612	1004–1005	
반명(기수)	통일교육위원 신규위촉자(제1기)	통일교육위원 신규위촉자(제2기)	통일교육위원 신규위촉자(제3기)	통일교육위원 신규위촉자(제4기)	통일교육위원 재위촉자(제1기)	통일교육위원 재위촉자(제2기)	통일교육위원 재위촉자(제3기)	통일교육위원 재위촉자(제4기)	동일교육협의회 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안보강사반(제1기)	통일안보강사반(제2기)	통일안보강사반(제3기)	이북5도민 간부	하나센터관계자(제1기)	하나센터관계자(제2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1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2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3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4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5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6기)	통일관련단체 임원(제7기)	23호
면	-	2	က	4	2	9	7	8	6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3	22	23	

5. 특별교육과정

고 비	별도 모집	별도 모집		o 한국인터넷기자협회(20명) o 추가모집예정(10명)	재일 민단(80명)		
인원	30	30	40	30	80	425	635
일수	미정	미정	-	2	4	1, 3	
일정	ı	I	0601–0601	0913-0914	1127–1130		
반명(기수)	통일정책 최고위(CEO)반(제1기)	통일정책 최고위(CEO)반(제2기)	지자체 간부(부시장 등)	언론인	재일민단 간부	기타	총10회 내외
연	1	2	3	4	2		

IV. 행정사항

- 1.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2. 참고사항

1.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각 기관(단체)은 본 교육 안내(일정, 인원 등)에 따라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통일 교육원에 공문으로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우편, FAX 등)

가. 제출처

○ 주소 : (142-715)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

- TEL: (02) 9017- 181, 183, 185

- FAX: (02) 9017- 059, 128

나. 제출 서식

- 교육대상별(단체, 학교, 공무원 등)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기재
- 필요시 해당 기관(단체)에 별도 양식 제공

2012년 통일교육대상자 명단(예시)

○ 기관/단체명(담당자):

○ 반명 (기) :

○ 교육기간 : 2012.00.00~2012.00.00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소속 (근무처)	주 소 (번지포함)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 가급적 엑셀로 작성

※ 교육대상자 변경·통보

- 명단 제출 후 인사발령 및 기타 입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 개시 3주전까지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사항

가. 교육비

○ 교육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통일교육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생활관

- 통일교육원 생활관 현황 : 총 140명 투숙 가능
 - 2인실(Twin) : 56실(112명), 온돌 : 4실(28명)
- 합숙반은 무료, 비합숙반은 1박당 1만원 징수
- ○객실 배정 방식
 - <mark>합숙</mark>반 교육생중 통근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중심으로 배정하며 통근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의 거주자는 워칙적으로 배정하지 않음
 - * 합숙반도 통근 가능한 근거리 거주자는 통근을 권장함.
 - <mark>비합숙</mark>반 객실이 여유가 있을 경우만 유료(1박 1만원)로 배정

다. 식사

- <mark>합숙</mark>반 : 조·중·석식 원내식당에서 무료 제공
- <mark>비합숙</mark>반 : 교육기간 중 중식만 원내식당에서 무료 제공

라. 현장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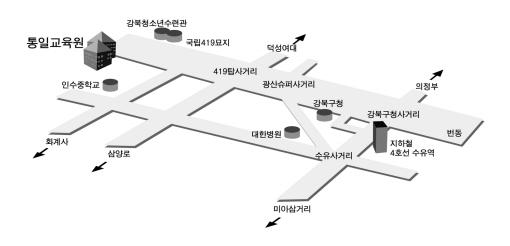
- 견학 자량과 중식은 교육원에서 부담. 교육 참여 단체(기관)가 자부담으로 임차한 차량으로 현장견학을 갈 경우는 차량은 지원하지 않음(별도 예산지 워 없음)
- * 판문점 견학 가능 여부는 통일교육원 소관이 아님, 전방사무소에 신청 후 불가 통보시그 외 지역(파주, 연천, 철원, 강화 등)으로 현장 견학

마. 등록 및 입교

- 교육 및 등록 장소 :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교육원 교육관 1층
- 매 과정마다 약 2-3주전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 안내사 항과 교육시간표를 공지하오니 이에 맞추어 입교
- 지참물 : 신분증, 세면도구(비누, 치약은 제공), 체육복 등

바. 교통안내

- 지하철 : 4호선 수유역 하차
- 통근버스 :수유역 → 통일교육원간 1일 3회 운행
 - 운행시각 : 통일교육원 버스(08:10, 08:40), 통일연구원 버스(08:30)
 - 승차지점 : 수유역 6-7번 출구 사이 파리바게트 앞
- 마을버스 01번
 - 승차 및 하차 지점 : 수유역 1번 출구 승차하여 종점에서 하차
- 지선버스 1119번
 - 승차지점 : 수유역 6-7번 출구사이(반드시 4.19국립묘지 방향인지 확인)
 - 종점하차후 도보 5분
- 통일교육원 약도



사. 금지 복장(특히 판문점 견학시 필수)

 찢어진 청바지, 작업복 형태의 바지, 반바지, 민소매 셔츠, 미니스커트, 몸에 붙는 니트, 운동복(추리닝), 목욕용 신발류, 샌들, 기타 품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복장

∨. 부 록

- 1. 통일교육원 현황
- 2. 퉁일교육원 홈페이지 안내
- 3. 통일전망대·통일관 안내
- 4. 북한자료센터 안내
- 5. 관련 법령
 -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통일교육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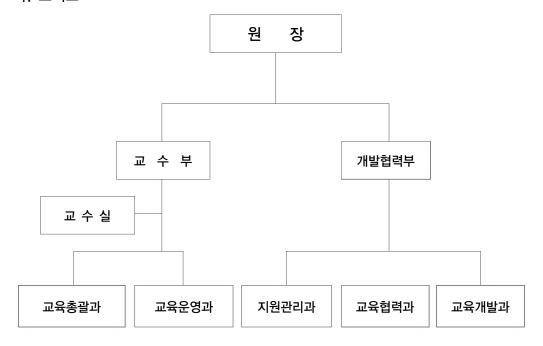
가. 연 혁

- 1972. 5. 1 통일원 소속기관으로 발족(통일연수소, 대통령령 제6158호)
- 1981. 3.16 통일안보교육 전문요원과정 신설
- 1986.10.18 북한관 개설
- 1986.12.26 「통일연수원」으로 개칭(대통령령 제12012호)
- ○1990.12. 5 현 청사 건립 이전
- 1994. 5. 3 「북한방문자 등 안내교육」주관 (남북교류협력시행지침)
- ○1996. 8.19 「통일대비요원과정」등 신설
- 1996.12.17 「통일교육원」으로 개편(대통령령 제15180호)
- 1999. 2. 5 「통일교육지원법」제정
- 1999, 5.24 통일교육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335호)
- 1999. 8. 6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공포
- 2000.10.13 사이버 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 개설
- 2003.12.30 「원격교육연수원」인가(교육인적자원부)
- 2004. 1.31 사이버교육과 신설
- 2005. 1.27 「통일교육지원법」개정(공포 1.27, 시행 7.28)
- 2005, 7.27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개정(공포 7.27, 시행 7.28)
- 2005. 「통일미래지도자 과정」(1년 장기과정) 신설
- 2007. 8. 1 교육운영과 신설(5과→6과)
- 2009. 1.30 사이버방북교육 개설 및 홈페이지명 개칭(사이버통일교육센터 → 통일교육원)
- 2009. 5. 4 2부 5과 체제로 개편(사이버교육과를 교육총괄과로 통합)
- 2009.10.19 「통일교육지원법」개정(공포 10.19, 시행 2010.4.19)
- 2010. 6.28 「통일교육 전문과정」개설
- '11.6. 사이버 통일교육 컨텐츠 전면 개편

나. 임무

-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장)
-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등 양성

다. 조직도



라. 시 설

시 설 명	시 설 내 용			
교육관	· 강 당 (1실) · 분임 토의실 (5실) · 대강의실 (1실) · 세미나실 (1실) · 중강의실 (2실) · 자료실 (1실) · 소강의실 (3실)			
생활관	· 1개동 침실 (60실), 휴게실 (7실)			
본관	· 원장실, 사무실, 교수실 등			
후생관	· 식당, 매점, 체력 단련실 등			

2.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안내

가. 연 혁

- '00. 10.13.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통 (www.uniedu.go.kr)
- '01. 3 「사이버통일교육팀」신설
- '01. 통일교육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02.~'03. on-off 연계방식의 교사 연수 실시(15h+15h)
- '03. 12 사이버교육연수원「기관인가」(교육인적자원부)
- '04. 1. 「사이버교육과」로 개칭
- '04. 4. 교사대상 사이버교육연수원 「단기과정인가」(30시간 2학점), (교육 인적자원부)
- '04. 6. 사이버통일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27h+3h)
- '04.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
- '05. 2. 권역별 교사대상 사이버통일교육 실시(9회)
- '06. 2. 교사대상 사이버통일교육 「장기과정인가」(60시간 4학점),(교육인적 자워부)
- '07. 9. 공무원대상 사이버통일교육 3개 과정 지정 통보(중앙인사위)
- '08. 7. 통일부 5급 이하 직원 대상 공무원 과정 개설
- '09.1.30. 사이버방북교육 개설 및 홈페이지 개편(사이버통일교육센터⇒통일 교육원)
- '10.10.4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및 홈페이지 개편
- '11.6. 사이버 통일교육 컨텐츠 전면 개편

나. 목표

- 정보화사회 진전에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원격교육으로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다. 주요 서비스

-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기능 강화
- 웹진시스템 등 통일교육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일선학교 통일교육 자료제공
- 통일교육 관련 정보검색 포탈사이트 지향

라. 상세메뉴

알림마당

- ○새소식
- ○교육안내 및 공지
- 교육일정
- ○이벤트
- 전국통일관 안내
- ○지역통일교육센터 안내

교육안내/신청

- 원내교육 :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공직자통일교육
- ○사이버교육: 교원 장기과정, 교원단기 과정, 공무원 과정, 방북안내 교육

자료마당

- 인기자료
- 최신자료
- 자료마당검색
- 기본자료
- 남북관계 지식사전
- 멀티미디어학습자료
- 합의서/법령/통계
- 발간자료 이용문의

교사용 자료

- 남북관계 소식
- ○통일문제 이해
- ○북하이해
-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 교사연구자료

청소년 통일배움터

○통일만화 : 통일·북한 관련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제공

○ 통일게임 : 통일·북한 관련 주제를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으로 제공

○ 통일교실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의 컨텐츠

○ 한마음학교 : '북쪽에서 온 친구들'의 이야기 및 함께 하는 공부 공간

○북한 청소년 백과 : 북한 청소년 생활 전반을 Q&A 형식으로 제공

○통일 Q&A : 통일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기술

고객광장

- 교육이용안내
- 이유틸리티 다운로드
- o FAQ
- 담당자 연락처
- 질의/건의

교육원소개

○(원장) 인사말, 연혁, 교육목표, 교수진소개, 조직 및 업무, 시설안내, 찾아오시 는 길, 교육서비스헌장

퀵 메뉴

- 교육일정
- 발간자료 이용문의
- ○오시는 길
- ○수료증 출력

3. 통일전망대·통일관 안내

오두산 통일전망대

가. 개 요

-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 임진강(강폭 460m)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임.
 -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 지역의 주민과 인민군 등 조망 가능
 - 각종 전시자료와 북한 영상실 구비

나. 관람안내

- (1) 관람시간(연중 무휴) * 설, 추석 연휴 개관
 - 09:00~17:30 : 4~9월
 - 09:00~17:00 : 3월, 10월
 - 09:00~16:30 : 11~2월
- (2) 관람내용
 - 북한전시실(북한의 어제와 오늘, 북한정보검색코너)
 - 북한생활체험장(살림집, 교실)
 - 개성공단 생산물품
 - 2층 북한영상실
 - ○육안 및 망원경으로 북한지역 조망
- (3) 교통편
 - 승용차
 - 강변북로→자유로. 88대로→행주대교→자유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 구파발→통일로→금촌(통일동산)
 - 대중교통
 - 열 차 : 경의선(서울역 → 금촌) 이용시 금촌역 하차 후 036번 버스 이용
 - 버 스 : ① 2호선 합정역(2번 출구에서 2200번 버스를 이용 성동 4거리 하 차 도보 10분. 통일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이용
 - ② 서울역앞(9709번, 909번) → 금촌 → 마을버스 이용(1-2번, 1-3번)
- (4) 안내전화 : (031) 945-3171, 3173

지역 통일관

가. 개 요

- ○국민들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및 균형있는 북한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지역에 통일관을 설치
 - 북한실상,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관련 자료 등 전시

나. 전시실 구성

○ 북한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현황자료를 담은 전시 패널, 북한주민생활용품 등 전시(살림집, 교실)

○ 통일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남북 공동생산물품 등 전시

○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북한영화 및 북한위성방송 관람 ○ 특수자료실 : 북한관련 서적, 노동신문 및 북한잡지 등 전시

다. 관람안내

(1) 관람시간

○11월~2월 : 09:00~15:00 ○3월~10월 : 09:00~18:00

* 각 지역 통일관 사정에 따라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2)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 신청

○ 문의전화 : 각 지역 통일관 안내전화 참조

라. 지역 통일관 현황

지역	위치	개관일	운영주체	연락처	휴관
고성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내	' 88.6.16	(주)통일전망대	033)681–0885	연중 무휴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 96.8.14	양구군	033)481–9021	매주 월
철원	강원 철원군 철의삼각지	' 90.12.15	철원군	033)450-5558	매주 화, 명절 연휴, 신정, 어린이날
인천	인천 남구 수봉공원내	'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032)868-0113	매주 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내	' 92.9.8	(주)동화진흥	031)945–3171	연중 무휴
대전	대전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내	' 01.8.11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042)866–5046 5164	매주 월
청주	충북 청주시 청주랜드내	' 93.2.23	청주시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043)2256-5050	매주 월, 명절
광주	광주 서구 화정2동	' 89.3.10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062)385-1301~2	매주 월, 토 휴관
부산	부산 부산진구 자유회관내	'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051)808-7960~3	연중 무휴
경남	경남 창원시 자유회관내	'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055)282-2332~3	연중 무휴
제주	제주시 탐라자유회관내	'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064)751-01091~2	매주 일, 명절 연휴
충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 07.4.5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041)881–1212	매주 일, 명절 연휴
서울	서울시 구로구 궁동 35번지	' 08.10.29	서서울 생활과학고	02)2613-5556	매주 일, 공휴일

4. 북한자료센터 안내

가. 개 요

(1) 설립 목적

- 1988년 7월7일 정부의 7.7선언에 따른 통일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전에 엄격히 제한 해오던 북한자료를 대폭 공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북한자료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청구역할을 수행하고자 1989년 5월 22일에 「북한 자료센터」를 개설함

(2) 주요임무

- 북한·통일관련 자료수집, 관리, 대국민 서비스
- 북한실상설명회 및 북한영화상영 전국적 실시
- 북한실상알림서비스 : 통일부 발간물 e-book 제작 및 마이크로필름화
-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소장 자료 DB구축 등 자료전산화

(3) 연혁

- 1989.05.22 북한자료센터, 개관
- 1990.03.25 북한영화상영회 및 북한실상설명회 개최 실시
- 1998.07 북한교과서 및 북한자료 순회 전시
- 1998.12.28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설
- 2004.12.29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정 체결
- 2005.01.17 북한자료센터 서고개가제 전면 실시
- 2006.10.07 RFID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구축
- 2007.12.01 통일 북한관련 자료 e-book 구현, 제공
- 2009.7.27 장소 이전(광화문우체국 →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 2010.07.29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구현

(4) 시 설

• 국립중앙도서관 5층, 연건평 300평(서고포함) 규모에 자료열람실, 영화상영 코너, 북한TV시청 코너로 구성되어 다양한 통일·북한 관련 자료를 제공

(5) 소장자료

- 북한자료 3만여건
 - 각종 연감, 문학서적, 백과사전, 교과서 등
 - 각종 신문, 주간 잡지, 월간지, 계간지 등
 - · DVD/비디오. 마이크로필름 등
- 통일·북한 관련 자료(국내외 자료 7만여건)
 - 통일 및 남북한 관련자료
 - 북한실상 및 동향 자료
 - 한반도 주변정세 관련 해외자료 등

(6) 주요 서비스

- 통일·북한자료 자료 이용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한 e-book 제공(통일백서 등 통일부 발간물)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북한동향, 일일방송 등)
 ※ 모바일 사이트 주소: http://munibook.unikorea.go.kr
- 북한TV 시청
- 북한실상설명회 개최
- 북한영화상영회 개최

나. 이용안내

- (1) 위치 및 교통편
 - 국립중앙도서관 5층(서초구 반포동)
 - 이 지하철 2호선(서초역 6번 출구), 7호선(고속버스터미널역 5번출구)
 - ※ 2009년 7월 광화문우체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

- (2) 이용시간
 - 평일(월 금): 09:00~18:00 ※ 2째, 4째 월요일, 토·일요일은 휴관(국가공휴일 포함)
- (3) 문의 전화: (02)730-6658, (02)720-2429
- (4) 홈페이지 : http://unibook.unikorea.go.kr

5. 관련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0, 4,20] [법률 제9800호, 2009,10,19, 2011,7,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무개정 2008 12 31]

-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 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삭제〈2008.12.31〉

-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 2009.10.19〉)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angle 개정 $2009.10.19\rangle$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무개정 2008.12 31]
-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 ③ 정부는 대학 등「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9800호, 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까지 생략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174⟩ 부터 ⟨192⟩ 까지 생략

2012년도 통일교육 운영계획

• 발 행 일: 2012년 2월

• 발 행 처 :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전화: 9017-052, 152, 181, 183

팩스: 9017-059, 128

● **편집** · **인쇄** : 웃고문화사 TEL. 02)2267-3956

〈비매품〉